2026년 4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

2026. 11. 5. (목)

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㈜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, 전력산업기술기준(KEPIC)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1. 주요사업

가.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

나. KEPIC 원자력 품질보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

다.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

2. 지원 개요

가. 지원 내용 :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,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**취득 소요비용 지원**

나. 지원 범위 :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과 KEPIC 및 해외품질 인증분야 간 중복지원 허용

※ 차수별로 1개 분야만 신청, 연간 최대 2개 과제 선정(단, KEPIC ↔ 해외품질인증 중복신청 불가)

다. 모집 규모 : 30개 과제 내·외(변동 가능)

라. 지원 규모 : 세부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음

지원구분	지원대상	지원항목	지원금액	지원한도
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[1]	일반	순수 취득 직접비 (교육비 등)	전액 지원	기업당 연간 지원 상한액[5] : 1억원 (ASME 포함 시 1억 5천만원)
		컨설팅비[4]	신규 1,000만원 한도 갱신 500만원 한도(1회)	
KEPIC 원자력 품질인증[2]	지원확대[3]	순수 취득 직접비 (인증·공인검사, 코드구매, 시험비 등)	전액 지원	
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[2]		컨설팅비	2,000만원 한도 지원	

1)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: 공고일 기준, Q·A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

*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등급 미보유 시 지원가능, A등급 보유 시 Q등급만 지원 가능, Q등급 보유 시 지원 불가

2)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: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

*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(18개 +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) : IEC, API, ASHRAE, ASME, CSA, NRTL, UL, CE, EAC(TRCU), RCC, RTN, TUV, CQC, HAF604, SASO, UKCA, NMC, ISO 19443

*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, **사전자체평가표**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(**60점 이상**)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

3) 지원확대(지원분야 공통)

① 주요사업 품목 : 계속운전, 신규 원전, 해외사업 등에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국내/외 원전 보조기기

신규 공급자 및 가동원전의 납품이력이 있는 미등록 원제조사

② 소수공급자 품목 : 기자재(보조기기/예비품) 소수 공급자(2개사 이하)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

③ 국산화 품목 : 해외공급자만 등록된 품목,원 소재를 전량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

④ CGID 확대 품목: CGID자격 확대 필수적용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

⑤ SRM우수공급자 : SRM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공급자에 한하며 우수공급자 선정 이후 3년간 인증서 갱신확대 지원으로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

⑥ 품질우수공급자 :「공급자 新 품질수준 평가제도」를 통해 선정된 우수 유자격공급자(보조기기/예비품 Q등급)에 한하며 선정 이후 3년간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

⑦ 정보보안우수공급자 : 정보보안 수준평가 선정된 우수 공급자(보조기기/예비품/용역 및 공사/기기수리)

4) 컨설팅비

① **KEPIC 및 해외품질인증 갱신** 시 **1회**에 한하여 **5백만원 한도 지원**

② 한국원자력산업협회 **「원전기업 인증제도」**를 통해 **원전기업 인증서(그린등급 이상)**를 발급받은 기업은 **1회**에 한하여 **신청 분야**와 **무관**하게 **컨설팅 지원금 5백만원 한도 추가 지원**

5) 소요비용 지원 예외

① 인건비,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②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

③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/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

※ 기타※

① 지원금은 '순수 취득 직접비' 와 '컨설팅비' 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

②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(금번 선정 포함)

* 2회 선정 시(총 지원금의 60% 지급), 3회 이상 선정 시(총 지원금의 30% 지급)

③「원전기업 인증제도」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(그린등급 이상)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지원사업 선발 후 협약기간 내 원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**1회에 한하여 지원금 감액 없음(100%지급)**

마.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

1)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

2) 컨설팅 업체는 별도 공개모집(상시 접수)을 통해 선정 예정

* 참여기업은 본 사업에서 공개모집 한 컨설팅 업체 이용에 한하여 컨설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3. 시행 절차



4. 신청기간 : 2026. 11. 5.(목) ~ 11. 18.(수) 15:00

가.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qs@kaif.or.kr)

나. 기타사항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 필수

5. 지원자격 : 한국수력원자력㈜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* 또는 중소기업

※ 중견기업 :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

6. 주요 일정

가. 2026년도 4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신청서 접수 마감 : **2026. 11. 18.(수) 15:00**

나. 선정평가 일정 : 2026년 12월 중 (일정 변경 가능)

다. 평가대상 기업 선정 : 2026년 12월 중

라.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: 선정 이후

마.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데이터 등록 : 선정 이후

7. 지원기업 선정평가

가. 사전 서류평가

1) 공통 : 부채비율 500%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'D'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제외

* '신용평가보고서' 내 재무평가 내용이 필수 확인되어야 함

2)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신청기업

① 등록 희망 분야(보조기기, 예비품, 용역 및 정비공사, 기기수리) 확인

② 등록 희망 분야의 표준절차서(표준구매-9240A/B/C/D) 확인 후 신청 품목 선정(붙임 9)

③ 표준절차서 내 '기술분야 세부 점검표' 항목 작성 후 마지막쪽 빈공간에 '이름, 소속, 직위, 서명' 기입

3) 해외 원자력 품질 인증 신청기업 (신규, 갱신)

①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 작성(붙임 10)

②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체평가표 제출

* 자체평가 관련 증빙서류 필수제출,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

나.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

1) 평가위원 : 한국수력원자력, 관계기관 전문가, 외부 심사위원

2) 평가방식 : **원격시스템(Zoom 등)**을 활용한 **비대면 평가**

3) 선정기준 : 선정평가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,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

※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(가점사항 포함)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수(사후 제출 불가)

※ 동점자 처리 기준 : 1. 유자격 업체, 2. 신규 지원업체, 3. 그 외 평가위원 협의 결과에 따름(필요 시 60점 이상 기업 중 추가 선정)

평가항목	세부 항목		배점
지원기업현황	• 납품실적 • 경영상태(매출, 수익성, 안정성)	• 사업수행 역량(전체인력, 해외납품실적 등) • 보유인증서 여부(국내외 인증, 특허 등)	20
성장성 및 안정성	• 성장성	• 안정성	10
지원사업의 타당성	• 지원 배경 및 필요성	• 사업 추진 내용	30
기대효과	• 활용 방안	• 기대 효과	30
종합 평가	• 생산제품, 원자력 적용 여부,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		10
가점사항	• 원전주변지역 기업 (발주지법) • 장애인기업확인서, 여성기업확인서, 경주시 위치 기업 • 국내·외 원전기자재 관련 공급사 등록 • KEPIC 및 해외인증 실적 • 원전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•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미등록 업체 (공고일 기준) • 한수원 SRM 우수공급자 (전년도) • 부채비율 100% 미만, 유동비율 100% 이상 • 창업·벤처기업* (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, 벤처기업 유효기간내) •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업 •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원사** •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기업***	: + 2 : + 1 : + 2 : + 2 : + 2 : + 1 : + 2 : +1 (+2, 모두 충족시) : + 1 : + 2 : + 2 : + 2	-

* 창업・벤처기업 제출자료 : 사업자등록증(창업기업), 벤처기업확인서(벤처기업)

** 회원사 증빙자료 :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단체회원증

*** 중소기업 기술마켓 제출자료 :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서 (인증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중부발전에 한함)

8. 유의사항

가. 본 사업은 선정기업이 **비용집행 및 인증취득 완료 후 한국원자력산업협회**로 **청구**하는 시스템이며, **비용 집행 이체일 기준**으로 **협약기간 내 비용집행 및 인증취득**한 비용만 **청구 및 정산**이 **가능** 합니다.

나. **인증 취득 불가** 시, **선정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**

다. 본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**제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.**

9. 문의처

가.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 등

-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박언주 대리(02-6953-2399 / qs@kaif.or.kr)

나.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안내

* 보조기기/기기수리 : 김윤민 차장(054-704-5373)
* 예비품(대리점 포함) : 이민준 차장(054-704-5375)
* 용역/정비공사 : 한승렬 차장(054-704-5372)

다. KEPIC 안내 : 대한전기산업연합회 KEPIC본부 문의

- URL : https://www.kepic.org:444/system_cert/cert_overview/intro_A.php

10. 사후 관리 :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

가. 사업완료(인증서 취득)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

-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(참고 : 결과보고서, 순수취득 비용 인정범위)

나. 전문기관(한국원산)에 제출 및 주관기관(한수원) 검토 및 보완요청

다. 주관기관 → 전문기관 지원금 전달 → 지원기업에 지원금 지급

붙임 1.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.
2. 생산제품 소개서 1부.
3.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 1부.
4.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.
5.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.
6. 사업자등록증 1부.
7.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.
8.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1부.
9. (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) 기술분야 세부 점검표 1부.
10. (해외인증)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 1부.
11. (참고) 결과보고서 양식, 순수 취득비용 인정범위 등 끝.